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88

발의연월일: 2021. 7. 19.

발 의 자:최연숙・남인순・권은희

金炳旭・이태규・권영세

서정숙 · 이용호 · 이명수

송재호 · 이채익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,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,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 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,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및 제5호). 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중 "제9호부터"를 "제8호부터"로 한다.

4의2.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	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
및 제공) ①・② (생 략)	및 제공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	
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	
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	
의 피해아동, 그 가족 및 아동	
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	
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	
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	<u>.</u>
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	
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	
재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의2.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</u>
	돌봄센터의 장
5.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	5
까지 및 <u>제9호부터</u> 제11호까	<u>제8호부터</u>
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	
의 장	
6. • 7. (생 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